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2-16호

직권말소 처분 공고

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등록 사항 직권말소 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,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. 7. 14.

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1. 직권말소 대상 업체

업체명	업종 [등록번호]	대표자명	소재지	사업자등록 폐업일자
유한회사 전주주류공사	식품제조가공업(주류) [제20130019226호]	천*근	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망산2길 1-13	2021.12.30.

2. 처분사항

○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('22. 7. 14.자)

3. 처분사유

○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음

※ 폐업근거: 전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-670(2022.4.4.)

4. 근거법령

○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

5. 고지사항

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「행정심판법」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「행정소송법」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※ 문의: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무관 이차경 / 062-602-1311)